

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0. 11. 13.

제 출 자 : 서구청장

1. 개정 이유

-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역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의 필요성으로 현행감면을 연장함

2. 주요 내용

- 부칙에 규정된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개정

3. 개정 조례(안) : 붙임

4.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예산 없음

다. 기타사항

(1) 입 법 예 고

(가) 예고기간 : 2020. 10. 5. ~ 10. 26.

(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(2) 규 제 심 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

(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(4) 성별영향평가 : 원안동의

(5) 비 용 추 계 서 : 해당사항 없음

(6) 조 례·규 칙 심 의 결 과 : 원안의결

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1096호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“2020년 12월 31일까지”를 “2023년 12월 31일까지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제3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」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부 칙</p> <p><조례 제1096호, 2017.12.27.>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유효기간)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</p> <p>제3조(일반적 경과조치) (생 략)</p>	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유효기간) ----- 2023년 12월 31일까지 ----- -.</p> <p>제3조(일반적 경과조치) (현행과 같음)</p>